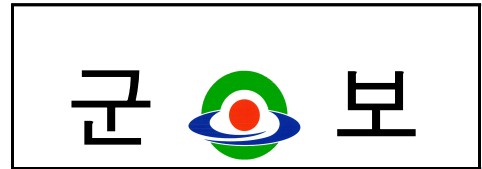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232호 2020. 5. 11.(월)

선 람	기 관 의 장

조 례

- 예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401호)
- 예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예천군 조례 제2402호)

규 칙

- 예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예천군 규칙 제1274호)
- 예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예천군 규칙 제1275호)

고 시

- 예천군 도로구역(군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예천군 고시 제2020-40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5월 11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401호

예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를 제43조로 하고, 제10장(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 지방세 불복청구 업무

제40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41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 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등의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

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청구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2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

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변상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종전의 제4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장 보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영세납세자가 비용 부담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절차에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의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신설(제40조)

○ 신청요건(모두충족)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배우자포함)
- 소유재산(부동산·회원권·승용차)가액 5억원 이하(배우자포함)
-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신청불가
- 법인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대상 체납자 신청불가

나. 선정대리인의 신청방법 및 절차, 통지 의무 신설(제41조)

- 신청서 제출 → 요건충족여부 → 대리인 선정 → 신청결과통지

다. 선정대리인의 의무와 우대방안 신설(제42조)

- 임기만료 전 지정사건 지속 수행
- 납세자 정보 관련 비밀유지
- 우수 대리인에 대한 표창 및 각종 위원회 위촉시 우대 가능
-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적 수당 지급 가능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5월 11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402호

예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

예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이유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조례 위임 근거 규정이 삭제된 이 조례를 폐지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예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

예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5월 11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규칙 제1274호

예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예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41조제2항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47호서식과 같다.

제25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조례 제4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을 통지하는 경우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선정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41조제6항에 따른 선정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관리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7호서식부터 별지 제49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접수번호	
------	--

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예천군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며, 예천군이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시|처|이 (치구이)

예천군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

① 신청인 용

○ 신청인 : ○○○ 귀하

1. 예천군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 00.00.00. 제출한 「예천군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는 (재산·소득요건 미충족)의 사유로 예천군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예천군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가 ' 00.00.00. 제출한 「예천군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의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예천군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예천군 선정 대리인

성명		자격	
사무실			
연락처	(전화)		(휴대폰)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② 선정대리인 용

○ 예천군 선정 대리인 : ○○○ 귀하

신청인 ○○○님이 ' 00.00.00. 제출한 「예천군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귀하를 예천군 선정 대리인으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지정 접수건(지정사건)

신청인(청구인)		접수(사건)번호	
과세기간·세목·청구세액		연락처	
주소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예천군수

관인생략

예천군 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illegible]

* 결정내용 : 인용(직권취소에 따른 각하, 재조사 포함), 기각, 각하

◇개정이유

영세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대리해 주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서식 등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선정대리인 신청 시 서식 명시
 - 예천군 선정 대리인 신청(제24조)
 - 예천군 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제25조)
 - 예천군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제26조)

예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5월 11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규칙 제1275호

예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예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행정 계획 및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 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 항목

제3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
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
우 추가 임명 및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
선(互選)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예천군 소속 공무원 중 재해 관련 업무 부서장

2. 방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4항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
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촉장의 교부) 군수는 위원으로 위촉한 자에 대하여 별지 서식

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 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 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재해영향평가서 중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또는 서면심의일 7일전까지 개최 안건과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의나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중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제2조 각 호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의견의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2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제2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

1. 원안 통과 :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2. 조건부 협의 :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3. 재작성 :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회의록)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 간사는 각 회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최·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회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심의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예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예

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른 예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

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예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재해영향평가서로 본다.

■예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별지 서식]

제 호

위 축 장

소 속 :

성 명 :

귀하를 예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00년 00월 00일

예천군수

◇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등과 관련된 기관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예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목적, 설치 등에 대한 사항(제1조·제2조)

○ 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인근 지역에 미치는 재해 영향 등을 심의
나. 위원회 위촉, 구성, 해촉, 제척, 기피, 회피 등에 대한 사항(제3조 ~ 제6조)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
-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

다. 위원회 운영, 의견청취, 현지조사, 심의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제7조 ~ 제10조)

-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 개최 필요 시 회의 소집
- 회의나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라. 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간사, 회의록 작성, 운영세칙에 대한 사항(제11조 ~ 제14조)

-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

마. 예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및 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부칙 제2조·제3조)

예천군 고시 제 2020 - 40호

예천군 도로구역(군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예천 도로구역(군도) 결정(변경)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 구역 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5월 11일

예 천 군 수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기정	군도	5호선	군도 5호선	보문면 신월리 구간	71,054	신월리 산35-1	작곡리 597-1	-	3.0km
변경	군도	5호선	군도 5호선	보문면 신월리 구간	70,490	신월리 산35-1	작곡리 597-1	-	3.0km
기정	군도	15호선	군도 15호선	호명면 황지리 구간	266,239	황지리 85	직산리 302-7	-	10.2km
변경	군도	15호선	군도 15호선	호명면 황지리 구간	265,089	황지리 85	직산리 302-7	-	10.2km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군도 사업추진으로 취득한 행정재산의 활용가치가 없고, 도로 이용자 및 차량 통행에 저촉이 되지 않아 용도폐지 됨에 도로구역에서 제척

3.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게재 생략(예천군 건설교통과 비치)

4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5가	10	집산 도로	2,992	신월리 287-1	작곡리 596-4	일반 도로	-	예고2009-635 (09.11.20)	군도 5호선
변경	소로	1	5가	10	집산 도로	2,992	신월리 287-1	작곡리 596-4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1	15나	10	집산 도로	5,652	직산리 1074-3	오암리 85	일반 도로	-	예고2009-635 (09.11.20)	군도 15호선
변경	소로	1	15나	10	집산 도로	5,652	직산리 1074-3	오암리 85	일반 도로	-		

5.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등 : 게재 생략(예천군 건설교통과 비치)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 건설교통과(054-650-63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